

보도자료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24. 11. 6(수) 08:30
담당	공제기획실장 황보훈(02-2124-4320), 부부장 이은지(4323)		

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추진, 정부·국회 힘 모아
- 국회, 소득공제 900만원까지, 장기가입자 임의해지도 퇴직소득 간주 등 법안 발의 -
- 정부,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까지,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확대 추진 -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폐업·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공제(이하 ‘노란우산공제’)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지난 31일 박수영 국회의원(국민의힘, 부산 남구)과 정태호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, 서울 관악구을)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입법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.
-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.
 -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.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%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며,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10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하더라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.

- 현행법은 노란우산을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.5%(지방세포함)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.
- 개정안이 통과되면, 실효세율이 약 5%인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. '24.9월말 기준 10년 이상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수는 약 19.1만명이다.
- 한편, 지난 8월 박희승 의원(더불어민주당, 남원장수임실순창)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것이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해지시 건강보험료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.
-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,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.
-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“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·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”이라며 “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끝.

※ 관련 법안

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'24.10.3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5133)」

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'24.10.3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5148)」

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'24.8.2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3019)」